

외국인 근로자 마약검사 신청서

1 신청서 작성 및 제출	신청대상 : 외국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. 신청마감 : 해당 외국인 입국 전 날까지 입금 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제출방법 : 팩스전송 FAX) 031- 379 - 8563
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2 검사비 입금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red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 color: white; font-weight: bold;">중요!</div> 입금자명 : 신청업체명 기재 금액 : ₩ 35,000 (1인당) 계좌번호 : 우리은행 1005-701-071555 조한호 (오산한국병원)
--------------------	--

3 완료	신청서와 입금 확인 후 예약 확정문자가 전송됩니다. 1. 전자계산서(면세) 발행시, 반드시 이메일을 기재하십시오. 2. 전월 계산서는 익월 10일까지만 발행 가능합니다. 3. 계산서 발행유무란에 발행여부를 꼭 체크하여 주십시오.
----------------	--

검사결과	1. 검진 전날까지 입금 확인 시에만, 검진 다음 날 법무부로 일괄 통보됩니다. 2. 단체검사 신청 시, 별도 검사 결과가 발행되지 않습니다. 3. 출입국관리소 전산으로 자동 통보됩니다.
------	--

문의	031 - 5176 - 0868 외국인마약검사 상담가능시간 08:00 ~ 17:00 점심시간 12:30 ~ 13:30
----	---

업체명		담당자 성명	
업체 전화번호		담당자 연락처	
업체주소			
사업자등록번호			
업태	종목	<small>*업체 세부 종목 기록 기재</small>	
전자계산서 이메일주소	<small>*계산서 발행 업체 이메일 주소 필수 기재</small>	계산서 발행유무	발행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발행 <input type="checkbox"/>
아래 외국인 근로자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내드린 "입국안내 자료"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기재바랍니다.			

	외국인 근로자 성명	국적	성별	입국일	비고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※ 매독, 결핵, 마약 등의 사유로 강제출국 되는 경우 검사가 완료 된 후 이기에 "마약검사 비용" 은 환불되지 않으니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8월부터 "외국인 마약검사 확인서 징구정책"에 따라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
 상기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기간 중 마약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업체 대표 :

(인)